

2013년 청학동 종합감사 결과



인천광역시연수구
감사실

2013년 청학동 종합감사 결과 보고

I 감 사 목 적

- ❖ 행정기관의 최일선 기관인 동 주민센터의 예산집행, 사회복지, 주민등록 및 민방위 업무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고
- ❖ 공직기강 해이 및 불합리한 업무처리 실태 등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개선·시정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구정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II 감 사 개 요

☐ 근 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체감사규칙
- 2013년도 감사·감찰 기본계획

☐ 감사기간 : 2013. 10. 28 ~ 10. 31 (4일간)

☐ 감사범위 : 2011. 10. 1일부터 추진한 업무 전반

☐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3명

☐ 중점감사 사항

-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회계업무 절차의 적정성
- 주민센터 운영 및 통·반장 관리 분야
- 복지행정서비스의 법규(지침) 준수 여부 및 지원관리 실태

- 주민등록, 인감 등 민원업무 처리 실태
- 민방위·공사분야 및 민원사무처리 실태

III 감 사 결 과

1. 총 관

☐ 감사처분내역

○ 행정상 조치	총 13건
- 시 정	4 건
- 주 의	9 건
○ 신분상 조치	총 1건
- 훈 계	1 명
○ 재정상 조치	총 1건
- 회 수	345천원/14건

☐ 감사처분요구 목록

연 번	지 적 사 항	처 분 요 구			비고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 치	신분상 조 치	
	계	13	1	1	
1	주민자치센터 강사 채용 부적정	주의			
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3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주의			
4	신용카드 관리 소홀	시정			
5	동 청사 보안의 무인경비시스템 가동 소홀	주의		훈계 /1명	
6	반장 종량제봉투 및 상여금 부당 지급	시정	회수 345,300원/14건		
7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업무 처리 소홀	주의			
8	자동인증기 관리업무 소홀	주의			
9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실태 확인 소홀	주의			
10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 소홀	시정			
11	민방위 업무 처리 소홀	주의			
12	하자검사 업무 소홀	시정			
13	계약업무 및 공사감독업무 처리 소홀	주의			

2. 총 평

- 금번 실시한 종합감사는 2011년 종합감사 이후 2년 만에 실시하는 것으로 예산회계, 주민자치센터운영,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 등의 동행정 전반에 대해 총 13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하여 행정상 조치(시정4, 주의9), 신분상 조치(훈계 1명), 재정상 조치(회수 345천원)를 처분 요구함
-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하여 조속한 시정조치는 물론, 향후에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업무연찬 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청학동 기본현황】

면 적 (km ²)	가구수	인 구(명)	행정조직		공무원수(명)	
			통	반	정원	현원
2.39	12,715	30,829	43	255	13	13

IV 주 요 지 적 사 항

1

센터운영·회계

주민자치센터 강사 채용 부적정

- 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제1항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제7조(운영) 제1항에 의하면 “자치센터의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청학동 주민센터에서는 매년도 주민자치센터 강사를 채용함에 있어 운영조례에서 정한 동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없이 강좌를 운영해오고 있으며 강사채용에 있어서도 채용절차 없이 부적정하게 채용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2

센터운영·회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2011년, 2012년 체육의 날 행사를 목적으로 집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청학동 주민센터에서는 2011.10.26외 2회에 걸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50,000원을 집행하면서 동장 외 11~12명의 위임 하에 현금으로 지출하였으며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3

센터운영·회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별표에 규정된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6호 마항에 의하면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아

항, 상근직원에게 연말,설,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청학동 주민센터에서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2011.10.14외 7회에 걸쳐 인사발령전출자 21명에게 상품권 각 50,000원씩 총1,050,000원을 지출하는 등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4	센터운영·회계	신용카드 관리 소홀
----------	----------------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4호)에 따라 신용카드는 지출원 또는 주무담당 책임하에 카드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관리하고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하며,
- 신용카드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에 대하여 부서장의 결재 및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매월 1회 부서장의 결재 및 확인을 받아야 함
- 그러나 청학동 주민센터에서는 2011.11월 ~ 2012. 12월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2013. 10. 31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조치하지 않았으며 신용카드사용내역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 부서장의 확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

5

보안

동 청사 보안의 무인경비시스템 가동 소홀

- 청학동 지방○○서기 ○○○는 청학동 새마을협의회 10월 월례회의 종료 후인 2013.10.18(금) 20:10분경 청학동 주민센터에서 퇴청하면서 시건장치만 잠그고 무인경비시스템(캡스)은 작동시키지 않고 퇴청하는 등 무인경비시스템 가동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신분상 훈계 】

6

통·반장 관리

반장 종량제봉투 및 상여금 부당 지급

- 연수구 통·반설치조례 제13조(편의제공) 및 제14조(실비변상),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통·반장에게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매월 무료로 제공받고, 매년 설날, 추석에 있는 달에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청학동 주민센터에서는 통·반장에게 매월 배부되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지급대장에 의하여 수령내역을 확인하여야 하나 2011.10월 ~ 2012.6월까지 지급대장을 관리하지 않아 배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전출자에 대하여 즉시 해촉처리를 하지 않아 부당하게 종량제봉투 및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

7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업무 처리 소홀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주민등록증의 발급은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한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만17세가 되는 달에 해당 월의 신규 17세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명부에 의하여 발급대상자에게 1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영 제29호 서식(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되 그 발급대상자의 무단전출 등으로 인하여 통지서를 내줄 수 없으면 이를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통지하거나 공고한 사실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하여야 함
- 2013.10.31일 감사일 현재까지 신규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김○ ○외 3명에 대해서 미발급 사유(무단전출 등)를 파악하여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사항을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전산입력하여야 하나 미발급 사유를 알 수 없는 등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8

주민등록

자동인증기 관리업무 소홀

- 연수구수입증지조례 제21조(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수익금의 정산) 및 연수구자동인증기사용업무 처리지침의 수입금 정산(수입금 납부)의 규정에 의하면 계기사용에 따른 증지대금을 수납 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 재무회계규칙 제37조제2호의 납입고지서로 구 금고에 납부토록 되어 있으며 수입금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고
- 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인으로 소인하되 소인된 면을 원본으로 보관하여 계기 및 무인발급기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음

- 청학동 주민센터에서는 2012. 3. 14, 2012. 4. 9일의 자동인증기 수입금에 대하여 각 1일씩 지연하여 납입한 사실이 있으며, 아울러 발급하지 못하여 결손처리한 제증명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제증명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결손 처리」 표시용 고무인을 별도로 날인하지 않고 관리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9

사회복지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실태 확인 소홀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제5편 수급자 관리-Ⅱ. 의사 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에 따르면 지급된 급여의 관리·사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등으로만 구성된 (단독)가구에 대해서는
- 부양의무자·형제자매 등 혈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사회복지기관 재가복지담당자, 의료기관 복지담당자 중 급여 관리와 사용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하고, 급여관리자로 하여금 급여의 지출내역을 기록관리(영수증 관리) 하도록 하며, 동장은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분기별로 급여관리지정 가구에 대한 현장 확인 후 급여관리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나,
- 청학동 주민센터에서는 2011년 4/4분기부터 2012년 2/4분기까지 의사 무능력자에 대한 급여관리 점검에 따른 점검표 작성시 동장의 확인을 누락하였으며, 또한 급여관리자의 급여 사용 실태 점검대상인 급여통장, 급여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 등 의사무능력자의 급여관리 실태확인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 201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자 중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장애인의 장애인 복지카드(또는 장애인 등록증)는 물론,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하며,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는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 본인의 소유차량이 아닌 동세대원 명의의 차량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 및 할인카드를 발급 받았으나 추후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할인카드를 반납 받아야 함
- 그러나 청학동 주민센터에서는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자 김○○외 8명에 대해서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의 사망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으나 장애인자동차 표지 및 고속도로 할인카드를 회수 및 폐기처분하지 않았으며,
- 고○○외 2명에 대해서 보호자의 전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장애인과 세대를 달리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음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표지 및 고속도로 할인카드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장애인자동차 표지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

-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규정에 의거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10일, 총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39조(교육훈련 불참자 조치 등) 규정에 의거 민방위대 교육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자에게는 경고 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를 주고 보충교육 불참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다만,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중인 사람 등 동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자들에 대하여는 민방위대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별지(제 22호) 서식에 따라 교육훈련 면제신청을 하여야 함
- 한편, 민방위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신체장애로 동원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재해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동원을 미룰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청학동 주민센터에서는 2011년, 2012년도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유예·면제자에 대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의 면제 신청을 하지 않은 3개월이상 해외 여행 및 체류 중인 불참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3개월 이상 출국자에 대하여 일괄 면제 조치하였으며,
- 또한, 민방위 교육·훈련을 유예·면제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서류를 접수 처리하지 않고 업무처리 하는 등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면제자에 대한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12

공 사

하자검사 업무 소홀

- 관계법규 및 「인천광역시연수구하자검사및보수에관한업무처리지침」 제3조(정기하자검사)에 따라 공사발주관리부서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년 2회이상 정기하자검사(4월, 10월)를 실시해야 하고, 동 지침 제4조(최종하자검사)에 의거 하자담보책임 만료기간이 도래하기 최소한 1개월 전에 정기하자검사, 수시검사와는 별도의 최종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 하자검사결과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하자보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 하자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관리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나,

- 청학동 주민센터에서는 그동안 발주 시행한 「청사 LED 전광판 설치공사 등 5건」에 대하여 하자보수책임 및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지 않았고 정기·수시·최종정밀 등 하자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하자검사 및 공사의 사후관리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시정 】

13

공 사

계약업무 및 공사감독업무 처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규정에 의거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시행할 때에는 견적가격이 거래실레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레가격 등과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감독자의 업무처리규정에 의거 공사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사 진행 단계별로 수급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 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수급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조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그러나, 청학동 주민센터에서는 2012년도에 「동 주민센터 민방위창고 환경개선공사」 시행을 위한 품의(계획)시 견적서(설계서) 등을 제출받아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하면서 계약액과 내역서상 금액을 다르게 계약하였으며,
- 2013년도 「동대본부 리모델링 공사」 시행을 위한 품의(계약)시에는 견적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시행품의 하였고, 공사시행에 따른 공사감독관 지정 및 공사감독일지 미 작성 등 건설공사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처분요구 ☞ 행정상 주의 】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위한 꽃길조성

☐ 추진배경

- 인도 변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투기로 도시미관 저해
-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도 통행인 보행 장애 및 잦은 민원발생

☐ 추진개요

- 시행시기 : 년 2회(봄·가을 시행)
- 시행구간 : 청학동 주민센터 주변 도로,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 소요예산 : 6,360,000원

☐ 추진방법

-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및 불법 주정차 상습구역을 선정하여 인도 변에 설치된 화분에 계절별 식재
(봄:베고니아, 가을:국화 및 포인세티아 식재)
- 주민자치위원 등 자생단체, 주민과 함께 쓰레기 수거 후 화분 정비

☐ 기대효과

-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감소 및 불법 주정차 해소
- 각 자생단체와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주민의견 반영 및 깨끗하고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 주민참여 확대